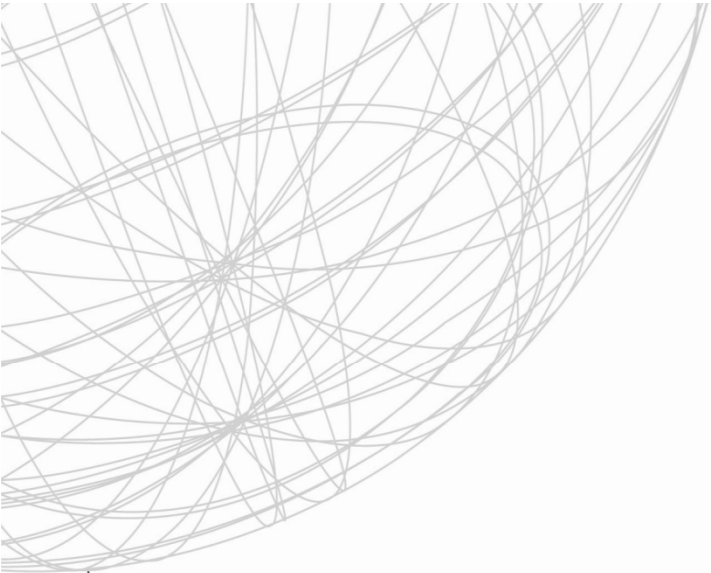




중국/인도의 반덤핑 대응 절차와 성공사례

2012년 2월

회계법인 서정
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-1 BYC빌딩 9층 (우.135-080)

Tel : 02.2051.4550 / Fax : 02.2051.5337

이 설명서에 대한 질의 등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.

E-mail : tikim@sojongac.com (김태익)



Contents

- I. 무역구제제도 소개
- II. 수입규제 현황
- III. 중국 / 인도의 반덤핑 조사 절차 및 특징
- IV. 대응방안 및 성공사례
 - (1) TPA 제품 중국 반덤핑 대응 사례
 - (2) PP(폴리프로필렌) 제품 인도 반덤핑 대응 사례



I. 무역구제제도 소개





1. 무역구제제도 소개

무역구제제도의 유형

무역구제제도	관세부과요건	구제방법
반덤핑관세 Anti-dumping duty	-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덤핑수입 -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-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	덤핑차액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부과
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	- 외국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조금 지급 -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- 보조금 물품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	보조금 범위내 상계관세부과
세이프가드 Safeguard	- 외국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-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- 수입급증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	수입수량 제한, 관세인상 등



2. 반덤핑 제도

반덤핑관세제도의 법적 근거

1) 국제규범 ; 국내규범의 제정근거

- WTO 설립협정
(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)
-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(일명 "WTO 반덤핑협정")
(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)

2) 국내규범 :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법률

한국

- 1) 관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2)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
미국

- 1)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
- 2) CFR(Code of Federal Regulation)
- 3) US DOC AD manual

EU

Council Regulation(EC) No 384/96 of 22 December 1995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C



2. 반덤핑 제도

회계법인 서정

반덤핑관세제도의 특징

제소자 및
조사기관

- 1) 제한적, 차별적 추가관세부과
- 2) 수입제한 효과가 크고 직접적
- 3) 다른 방법에 비해 부과가 용이
- 4) 재심 및 일몰재심을 통한 계속적인 통제



피제소자
(수출기업)

- 1) 짧은 기한 내에 방대한 자료제출 부담
- 2) 답변서 제출 및 실사 등의 시간 및 인력 투입
- 3) 수입자들에게 불확실성 부여
: 피소업체의 시장포기를 유도



✓ 가장 확실한 수입억제 효과

II. 수입규제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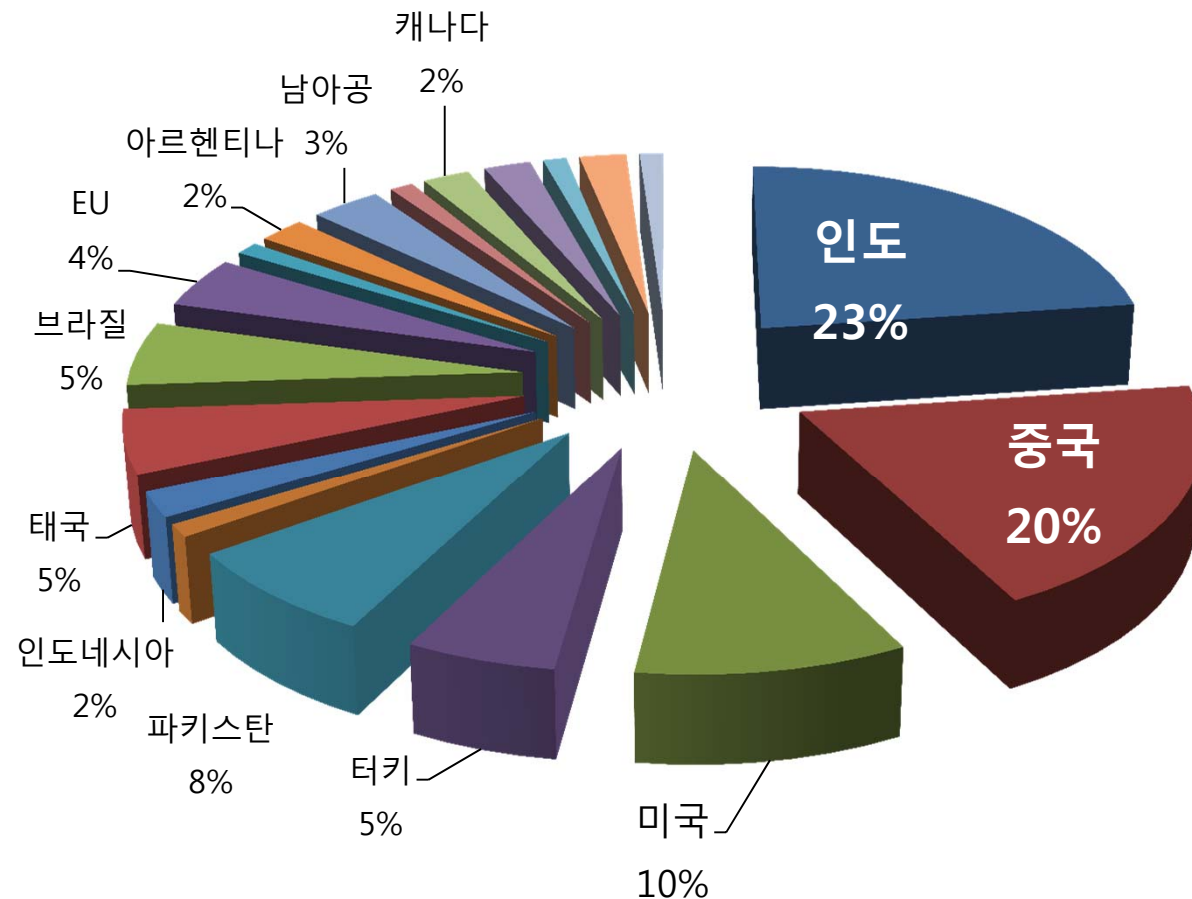


2. 수입규제 현황

회계법인 서정

2011.12.31 현재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(반덤핑 조치)

국가	규제건수
인도	21
중국	18
미국	9
파키스탄	7
터키	5
태국	5
브라질	5
EU	4
남아공	3
인도네시아	2
아르헨티나	2
캐나다	2
이집트	2
호주	2
러시아	1
우크라이나	1
말레이시아	1
일본	1
멕시코	1
합계	9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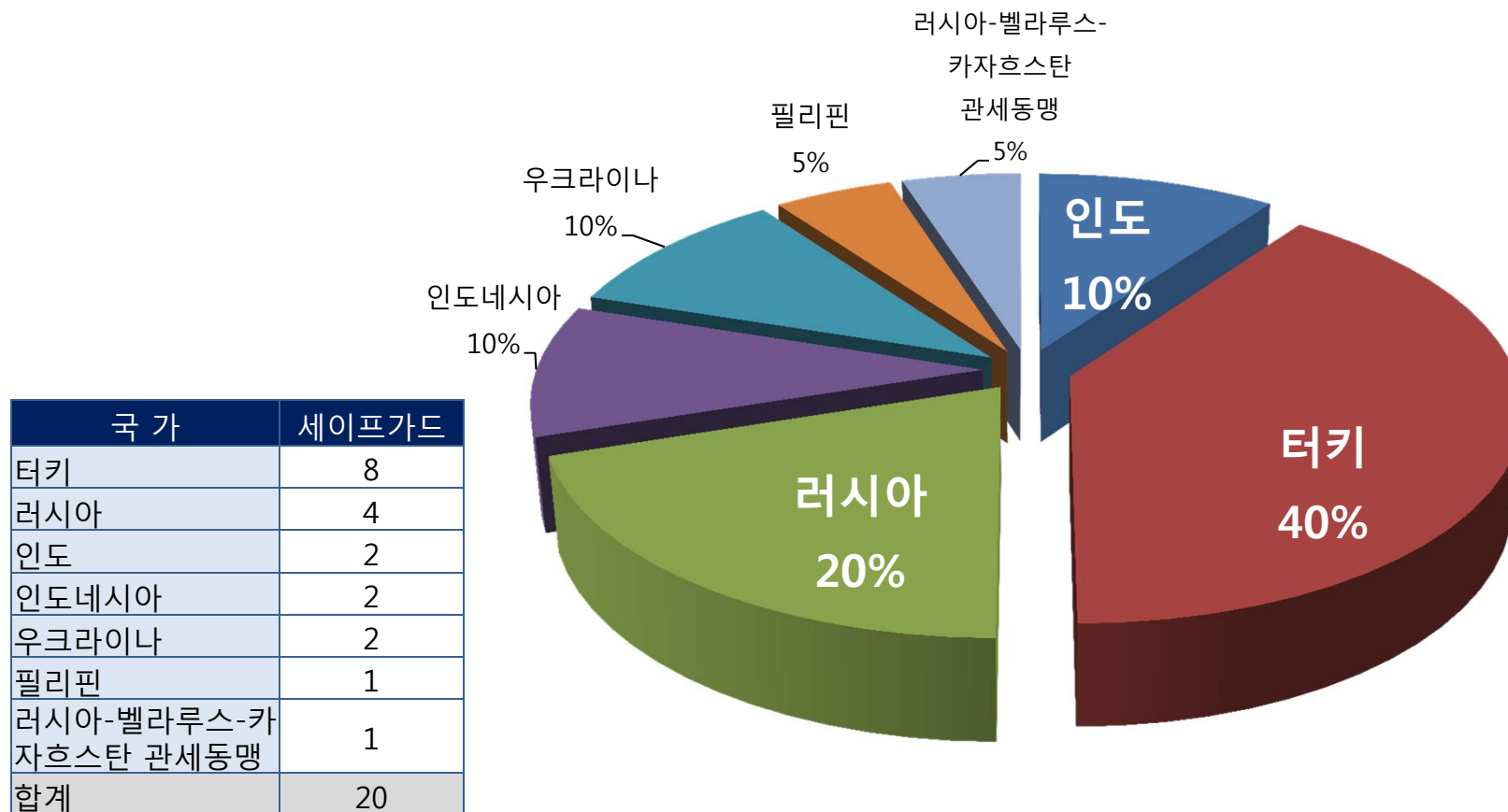
[출처 : 외교통상부 (수입규제 국가별/ 조치별 현황(2011.12.31) /www.mofat.go.kr]



2. 수입규제 현황

회계법인 서정

2011.12.31 현재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(세이프 가드 조치)



[출처 : 외교통상부 (수입규제 국가별/ 조치별 현황(2011.12.31) /www.mofat.go.kr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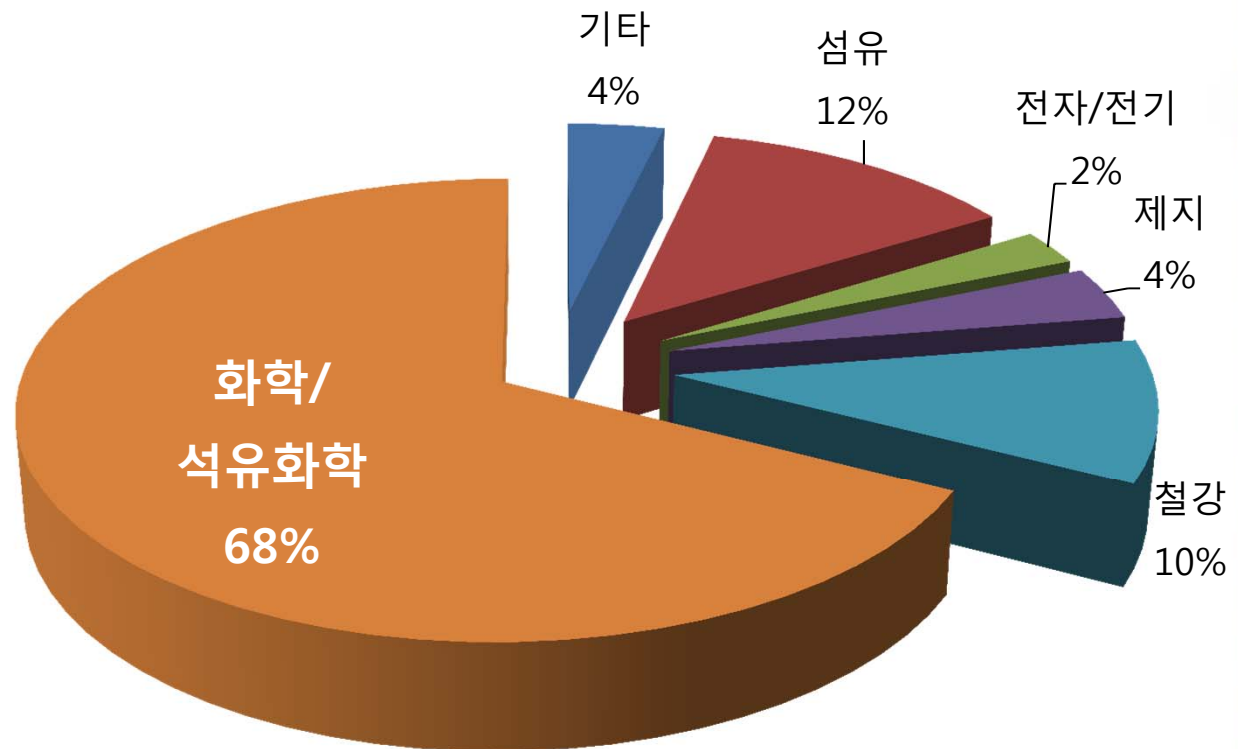


2. 수입규제 현황

회계법인 서정

중국, 인도의 산업별 반덤핑 조사 현황 (1997~2011 원심조사)

산업구분	반덤핑조사 건수
화학/석유화학	54
섬유	10
철강	8
기타	3
제지	3
전자/전기	2
총합계	8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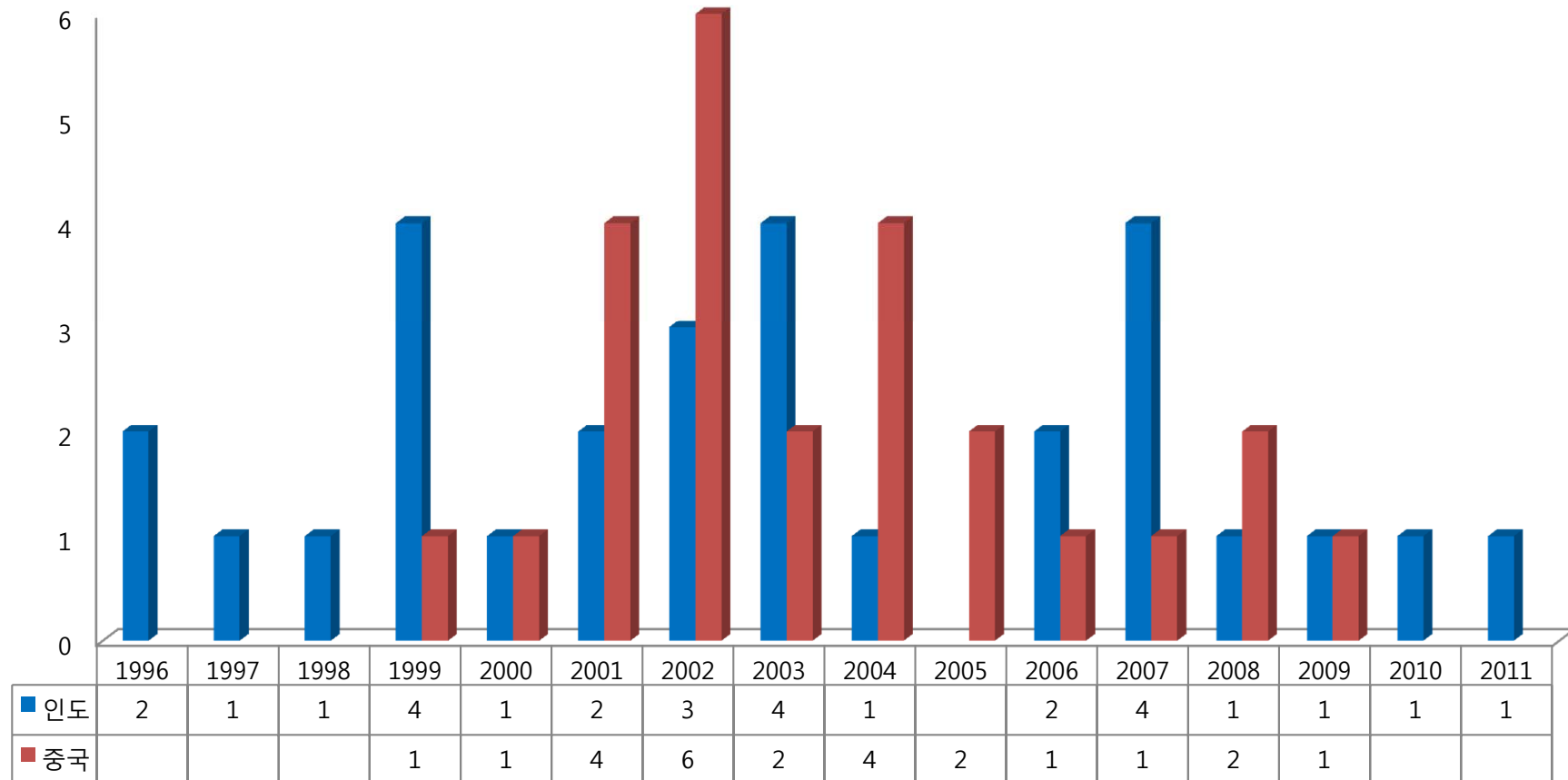
[출처 : 무역협회(주요국의 수입규제 내역) /www.kita.net]



2. 수입규제 현황

회계법인 서정

중국, 인도의 화학/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현황



* 재심 및 일몰재심 제외



2. 수입규제 현황

회계법인 서정

Trend

01

선진국의 수입규제 → 개도국의 수입규제

성숙/쇠퇴기의 사양 산업 보호 수단 →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 수단

Trend

02

FTA 로 인한 관세/ 비관세 장벽철폐

→ 수입 급증

→ 반덤핑 제소 증가 예상

☞ 한-인도 CEPA 체결 직후, Stainless Hot Coil 및 폴리프로필렌 반덤핑 조사개시 (2010)

Trend

03

화학/ 석유화학제품에 반덤핑 규제 지속 예상

- 2008년 말 이후의 Global Recession

- 세계적 기술수준 표준화로 개도국 시장에서의 경합관계 증대

III. 중국 / 인도의 반덤핑 조사 절차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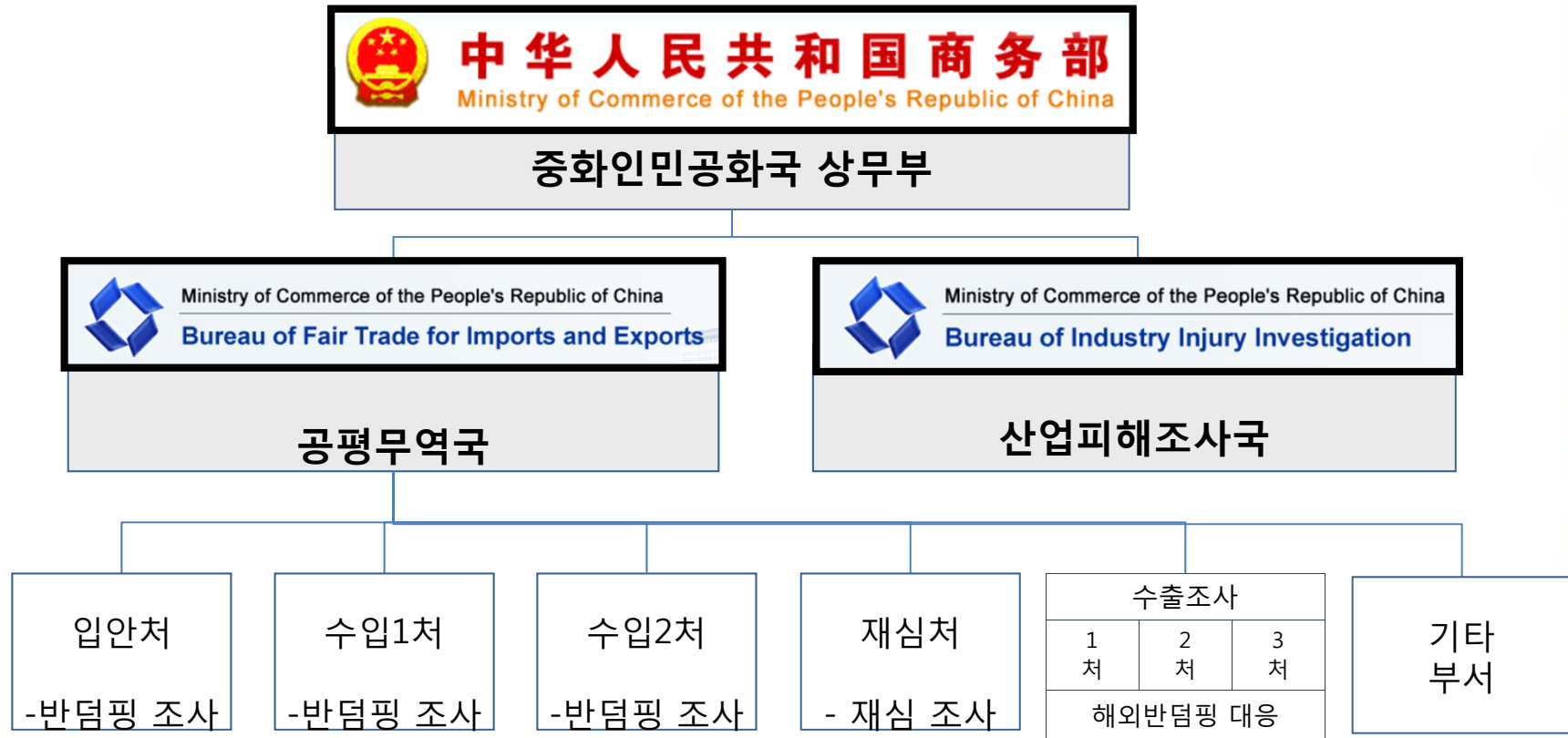




3. 중국 / 인도의 반덤핑 조사 절차 및 특징

회계법인 서 정

중국 반덤핑 조사기관



중국 반덤핑 관련 법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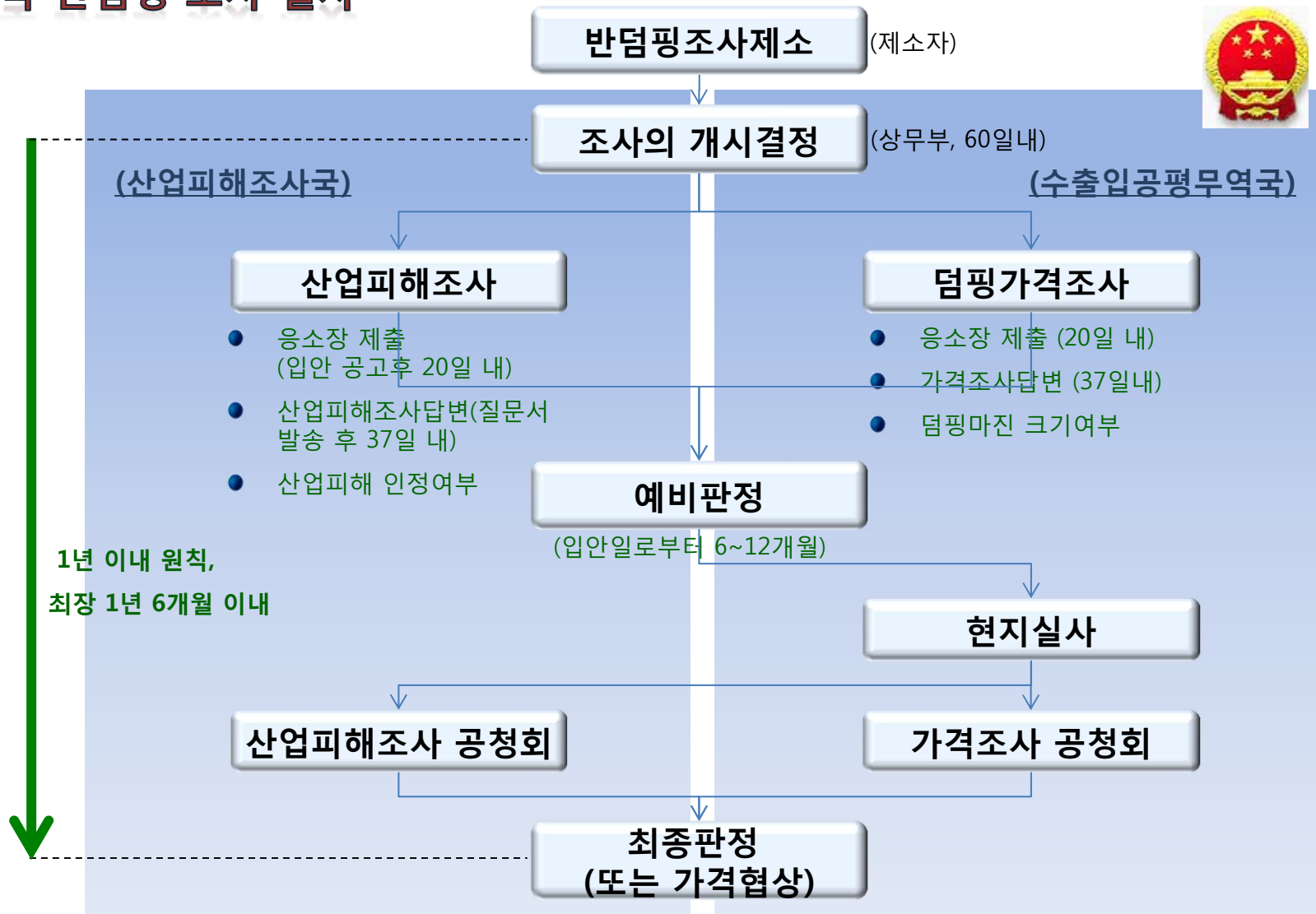
- 1)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
- 2) 반덤핑조례
- 3) 반덤핑 관련 시행규칙



3. 중국 / 인도의 반덤핑 조사 절차 및 특징

회계법인 서 정

중국 반덤핑 조사 절차





3. 중국 / 인도의 반덤핑 조사 절차 및 특징

회계법인 서정

인도 반덤핑 조사기관



सत्यमेव जयते



1. 반덤핑 조사기관 :

Directorate General of Anti-dumping and Allied Duties (DGAD)

under Department of Commerce i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

- 조사개시부터 최종판정까지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함
- 반덤핑 마진(Dumping margin)과 산업피해 마진(Injury margin)을 결정

2. 반덤핑 관세 부과기관 :

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(CBEC)

under Department of Revenue in Ministry of Finance

- "DGAD"가 덤핑마진율을 통보하면 상기 기관이 덤핑관세 부과를 집행함

3. 반덤핑 관련 상소기관 :

3-1. Customs, Excise &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 (CESTAT)

- "DGAD" 판정에 대한 상소 기관

3-2. Supreme Court of India

- "CESTAT" 판정에 대한 상소 기관

인도 반덤핑 관련 법규

1) Section 9 from Customs Tariff Act 197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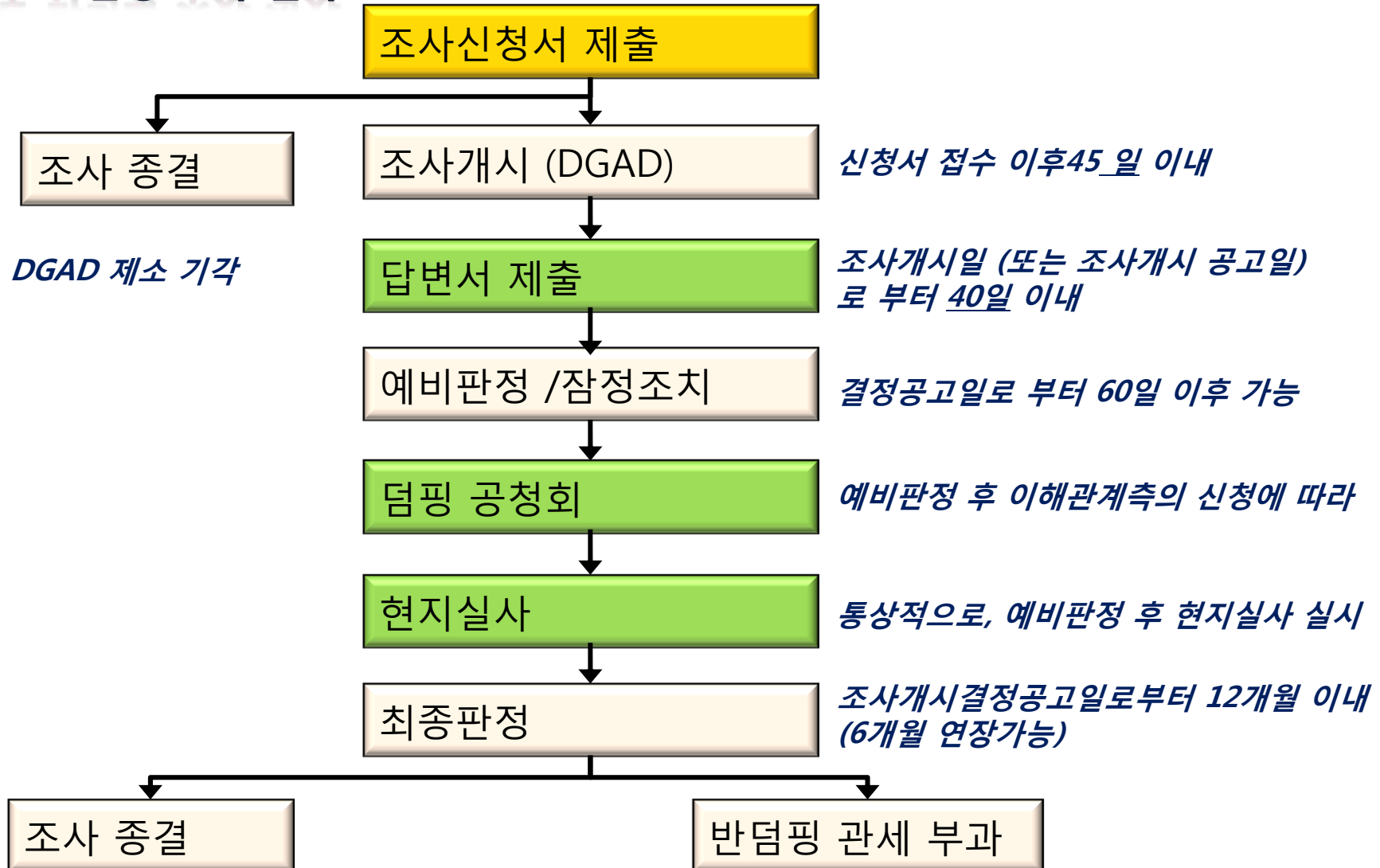
2) Customs Tariff (Identification, Assessment & Collection of Anti-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) Rules, 1995



3. 중국 / 인도의 반덤핑 조사 절차 및 특징

회계법인 서 정

인도 반덤핑 조사 절차





3. 중국 / 인도의 반덤핑 조사 절차 및 특징

회계법인 서정

Trend

01

개도국 반덤핑 조사의 일반적 특징

- ✓ 조사과정의 불투명
- ✓ 주관적/ 정치적인 판정
- ✓ 제소자와 조사당국의 밀착

Trend

02

합리적인 항소절차 미흡

- ✓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항소
- ✓ 많은 시간 소요 (인도의 경우, 보통 2~3년 이상 소요)
→ 항소의 포기 유도

Trend

03

불공정 무역의 구제 < 보호무역의 수단

IV. 대응방안 및 성공사례

(1) TPA 제품 중국 반덤핑 대응 사례

(2) PP(폴리프로필렌) 제품 인도 반덤핑 대응 사례





4. 성공사례 (TPA 중국 반덤핑)

1. 피소 개요

- (1) 대상제품 : 테레프탈산(TPA; Terephthalic Acid)
- (2) 제소국 : 중국
- (3) 피소국 : 한국 및 태국
- (4) 한국의 대 중국 수출규모 : 연간 28억400만 달러
- (5) 중국 제소자
: Zhejiang Hualian Sunshine Petro-Chemical Co., Ltd,
Zhejiang Yisheng Petrochemical
XIANGLU Petrochemical
- (6) 덤핑조사 대상 기간 : 2007년 10월 1일 ~ 2008년 9월 30일
- (7) 조사대상 기업
: 삼성석유화학, 삼남석유화학, 태광, KP케미칼, SK유화, 효성 6개 기업
- (8) 제소자 주장 마진 : 11.26%

2. 주요 대응 경과 사항

- (1) 제소 신청 : 2008년 12월 12일
- (2) 조사 개시 : 2009년 1월 12일
- (3) 응소 : 2009년 2월 2일
- (4)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(석유화학 공업협회 및 국내 생산자) / 산업피해 공동 대응
: 2009년 3월
- (5) 답변서 제출 : 2009년 4월
- (6) 민관 합동 대표의 중국 상무부 방문 : 2009년 6월
→ 국내업체 공동 의견 및 정부 의견서 제출
- (7) 산업피해 의견서 제출 : 2009년 6월
- (8) 중국내 상,하방업체 진술회 : 2009년 6월



4. 성공사례 (TPA 중국 반덤핑)

회계법인 서정

(9) 반덤핑 예비판정 : 2010년 2월 2일 :2.7%~4.2%

(10) 현지실사 : 2010년 2월

(11) 최종판정 : 2010년 8월 12일

* 석유화학공업 협회 및 외교부의 지원

- ✓ 한중통상장관회담 계기 통상교섭본부장 - 중국 상무부장 면담(09.4.18, 9.3, 10.5.23),
- ✓ 한중무역실무회담 계기 지역통상국장 - 중국 아주사장 면담(09.3.31, 10.10, 10.7.7),
- ✓ 수입규제대책반 파견(09.2.19 이후 4차례 방중),
- ✓ 주중대사관의 중국 상무부 접촉(09.3.25 이후 8차례) 등
모든 협의채널을 통해 한국생산자의 의견 제기



4. 성공사례 (TPA 중국 반덤핑)

3. 시사점

➤ 중국 제소자가 주장하는 산업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이 실효

- (1) 보호무역주의 지양
- (2) 중국 제소자가 주장하는 산업피해는 수입제품과 인과관계가 없음
- (3) 한국산 제품은 중국에 덤핑 수출을 하지 않음
- (4) 한국 수출자들은 대 중국 수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없음
- (5)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은 중국 하방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함
- (6) 대만산 제품 조사 제외의 불공정성
- (7) 경영상황 악화의 수입품 이외의 기타 원인

➤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(QTA) 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합리적 증거에 의한 설득으로 대상 품목에서 제외

➤ 민관협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및 지속적인 중국정부 설득으로 성공적인 결과 도출

- (1) 대응 업체의 신속한 대응
- (2)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
- (3) 협회 주도하에 산업피해 공동대응 및 유기적 협력
- (4)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/ 협조 유도
- (5) 중국내 공동 이해관계자(하방산업) 적극 설득



4. 성공사례 (Polypropylene 인도 반덤핑)

1. 피소 개요

- (1) 대상제품 : PP (Polypropylene 및 Polypropylene copolymers 포함)
- (2) 제소국 : 인도
- (3) 피소국 : 한국, 미국 및 대만
- (4) 한국의 대 중국 수출규모 : 연간 4만 5천 톤 (1억불)
- (5) 인도 제소자 : Reliance
- (6) 덤핑조사 대상 기간 : 2008년 7월 1일 ~ 2009년 6월 30일
- (7) 조사대상 기업
: LG화학, 호남석유화학, 폴리미래, 삼성토탈, SK, GS칼텍스, 효성, 대한유화공업 등 8개 기업
- (8) 제소자 주장 마진 : 22.22%

2. 주요 대응 경과 사항

- (1) 제소 신청 : 2009년 7월 29일
- (2) 조사 개시 : 2010년 2월 10일
- (3)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(석유화학 공업협회 및 국내 생산자) / 산업피해 공동 대응
: 2010년 3월
- (5) 덤핑 답변서 제출 : 2010년 4월 20일
- (6) 산업피해 의견서 제출 및 DGAD 방문 : 2010년 4월 20일
→ 국내업체 공동 의견
- (7) 정부 의견서 제출 : 2010년 5월 3일
- (8) 산업피해 주장을 위한 DGAD 방문/ 조사관 면담 : 2010년 9월 9일
- (9) 공청회 (1차) : 2011년 1월 24일
- (10) 공청회 (2차) : 2011년 3월 11일
- (11) 조사 종료 : 2010년 3월 25일 (산업 무피해를 우려한 제소자의 제소 철회)**



4. 성공사례 (Polypropylene 인도 반덤핑)

* 석유화학공업 협회 및 외교부의 지원

- ✓ 외교 통상부 FTA 정책국장 DGAD 방문 / 정부의견 제기 ('10.05)
- ✓ 석유화학공업협회 및 업체 공동대표의 DGAD 방문/ 산업피해 부당성 주장 ('10/04)
- ✓ 2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업계 공동으로 제소자의 산업피해 주장 반박

4. 시사점

➤ 인도 제소자가 주장하는 산업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이 실패

- (1) 인도시장의 가격하락이 덤핑에 따른 것이 아님
- (2) 한국향 물량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함
- (3) 모호한 대상제품의 범위에 대한 반박
- (4) 제소장의 불충분한 증거력
- (5) 산업피해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함.
- (6) 한 인도 CEPA 에 의한 불공정 관세

➤ 민관협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및 지속적인 인도정부 설득으로 성공적인 결과 도출

- (1) 대응 업체의 신속한 대응
- (2)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
- (3) 협회 주도하에 산업피해 공동대응 및 유기적 협력
- (4)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/ 협조 유도
- (5) 인도내 공동 이해관계자(하방산업-플라스틱 공업협회 등) 과 유기적인 공조



4. 대응 전략

중국, 인도 반덤핑의 효과적 대응 전략

< 사전적 대응 >

1. 수출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
2. 주요수출국에 대한 규제동향 (제소 움직임) 모니터링 강화
 - ✓ 현지 Agent, Importer, 변호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
 - ✓ 상대국의 수입동향 점검
2.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통상협력 추진 (민, 관, 협회)
 - ✓ 수출상대국의 제조자(잠재적 제소자)와의 Communication Channel 확보
 - ✓ 협회 등을 통한 민·관 통상협력 추진



4. 대응 전략

중국, 인도 반덤핑의 효과적 대응 전략

< 사후적 대응 >

1. 신속한 대응 및 성실한 조사 참여가 기본

- ✓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
- ✓ 외부전문가(현지변호사, 국내회계사 등) 적극 활용

2. 정부, 협회 등의 측면지원이 절실히 필요

- ✓ 선진국의 반덤핑 조사 → 합리적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조사
- ✓ 개도국의 반덤핑 조사 → 제소업체와 조사당국의 밀착으로 업체 노력만으로 역부족
- ✓ 정부의견서, 면담 추진 등
 - ☞ 외교통상부의 수입규제 대책반 적극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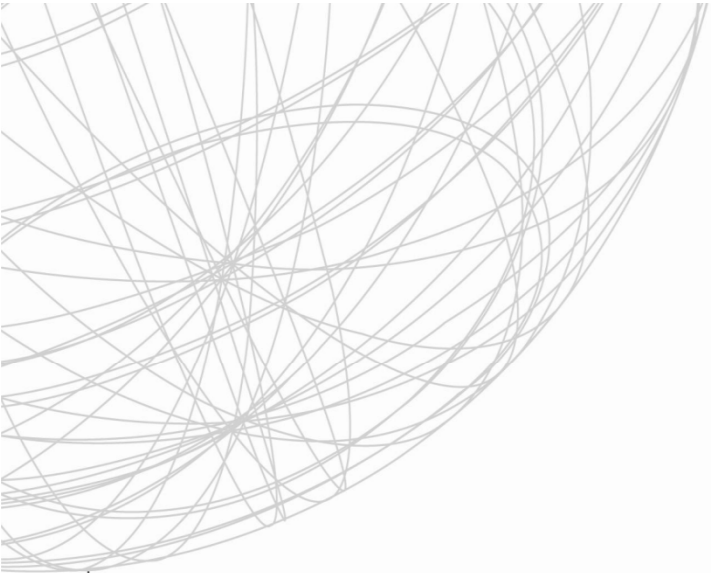
3. 협회 및 업계 공동 대응 필요

- ✓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에 근거한 다각적인 의견 개진
- ✓ 협회, 단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/ 이의 제기

4. 산업피해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

- ✓ 아직도 개도국의 반덤핑 조사시에 산업피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므로
- ✓ 산업패해 조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5. 재심 및 종료재심 활용



감사합니다!

회계법인 **서정**

김태익

공인회계사, 국제통상 /FTA 전문

Tel : 02.2051.4550 / Fax : 02.2051.5337

Mobile : 82.2.010.2845.6698

E-Mail : tikim@sojongac.com

